

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06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0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, 구인·구직상담, 취업알선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김포일자리센터 운영

나. 위탁기간 : 2023. 1월 ~ 2023. 12월 (1년)

다. 위탁방법 : 민간위탁

라. 선정방법 :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

※ 용역에 의한 제안업체 선정으로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

(관련근거 :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, 김포시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)

라. 위탁내용 :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 사무 전반

마. 주요위탁사무

- 일자리센터 전문인력 운영(직업상담사 20명)
- 취업상담창구 운영(구인구직상담, 취업알선, 사후관리, 구인처 발굴 등)
-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
- 채용박람회, 상설·동행면접 운영 등 일자리사업 추진
- 기타 취업 지원 관련 업무 추진

3. 관계법령

가.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(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)

나.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4. 예산수반사항

가. 소요예산 : 880,460천원(도비 179,936천원, 시비 700,524천원)

- 상담창구 인건비 : 788,194천원

(취업상담창구 20명 : 센터 5명, 본청 1명, 읍면동 14명)

- 프로그램 운영비 : 92,266천원(취업교육, 행사운영비 등)

5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발췌서 : 붙임

소관 실·과·소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일자리경제과장 두 춘 언
	팀장 직위·성명	일자리사업팀장 이 지 은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노경숙(☎2261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(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)
-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 등 지원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김포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
 - 일자리센터 전문 인력 운영(직업상담사 20명)
 -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기타 일자리사업 추진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총 소요액		880,460	924,600	970,800	1,019,300	1,070,000	4,865,160
김포일자리센터 위탁운영	인건비	788,194	827,600	869,000	912,400	958,000	4,355,194
	운영비	92,266	97,000	101,800	106,900	112,000	509,966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과장 두춘언 팀장 이지은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	
세 입	880,460	924,600	970,800	1,019,300	1,070,000	4,865,160	
국 비							
도 비	179,936	188,940	198,400	208,300	218,700	994,276	
시 비	700,524	735,660	772,400	811,000	851,300	3,870,884	
세 출	880,460	924,600	970,800	1,019,300	1,070,000	4,865,160	
국 비							
도 비	179,936	188,940	198,400	208,300	218,700	994,276	
시 비	700,524	735,660	772,400	811,000	851,300	3,870,884	
재원 조달	880,460	924,600	970,800	1,019,300	1,070,000	4,865,160	
의존 재원	소 계	179,936	188,940	198,400	208,300	218,700	994,276
	보조금	179,936	188,940	198,400	208,300	218,700	994,276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00,524	735,660	772,400	811,000	851,300	3,870,884
	지방세수입	700,524	735,660	772,400	811,000	851,300	3,870,884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「고용정책기본법」

제12조(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)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
2.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
- 3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**

4.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

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·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개정 2010. 6. 4.>

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14.>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③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